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인

201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08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도·감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